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693호

의 안 명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대상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9. 19.

주 문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9월 19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육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협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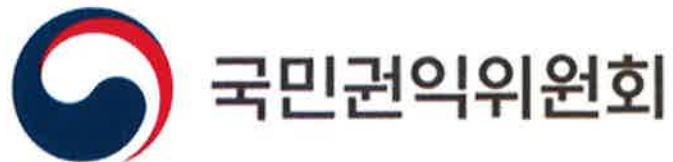


[별지]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2022. 09.



ACRC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관련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6
2.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13
3.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	17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9
[붙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 등	21



I. 추진 배경

- 그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충·개선, 비대면·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우리나라 자전거 보유대수는 '10년 620만대 수준에서 '15년 1,022만대, '16년 1,127만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자전거 이용인구는 1,340만 명에 달함(한국교통연구원, '17.3월)
- 반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도 함께 늘어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문제 노출
- 대부분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운영에 미온적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 등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에 효율적 대처 곤란
 - * 총 79개 지자체만이 조례상 자전거 등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17개(7.5%)에 불과
-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지자체가 공적 예산을 동원하여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이 부당하게 공공에 전가
 - * 사용하던 자전거를 폐기 처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전거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대형생활폐기물, 5천원 내외)하여 배출하여야 함
-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피해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
- 이에 따라, 도난·방치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도난·방치자전거로 인한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II. 관련 현황

□ 법령·조례 현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2조(자전거의 등록)

※ 자전거 소유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장의 처분 의무·방법 등을 규정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 등록 근거·절차를 구체화하고,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 대부분 지자체가 자전거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 미제정
-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 및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은 없거나 미흡한 실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단위 : 개 / %)

관련조례 제정여부		자전거등록제 근거규정		방치자전거 처리 근거규정	
제정	미제정	규정	미규정	규정	미규정
199(87.3)	29(12.7)	79(34.6)	149(65.4)	145(63.6)	83(36.4)

□ 자전거 등록제 운영

- (등록 현황²⁾) 17개 지자체(17/228, 7.5%)만이 실제 자전거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전거의 총 대수는 113천 대(1% 내외)수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실제 자전거 등록 및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228개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2)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 (등록 기준) 자전거법에 의한 자전거^{*}를 등록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에 관한 정보(고유번호, 자전거 종류, 제조사, 색깔 등)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등록

*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 (등록 방식) 17개 자전거 등록제 운영 지자체는 수기(방문), 모바일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등록 방식으로 등록업무 수행

<자전거 등록 방식 현황>

(단위 : 개 / %)

등록 방식	합계	수기 (방문등록)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수기+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수	17(100)	9(52.9)	4(23.5)	3(17.6)	1(5.9)

- (운영 비용) 자전거 등록제 운영에 따른 지자체 연간 재정 부담은 미미한 수준

- 다만, 예외적으로 모바일 앱 등록 방식의 경우 앱 운용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전거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

* 서울 노원구 3.6백만 원, 경북 상주시 9백만 원 등

** 경남 함양군 11백만 원[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금전) 제공]

□ 방치자전거 처리

- (처리 현황)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물량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서 전국 수거·처리 물량(연간 34천 대 수준)의 85% 내외를 처리

<수도권 및 광역도시 방치자전거 처리현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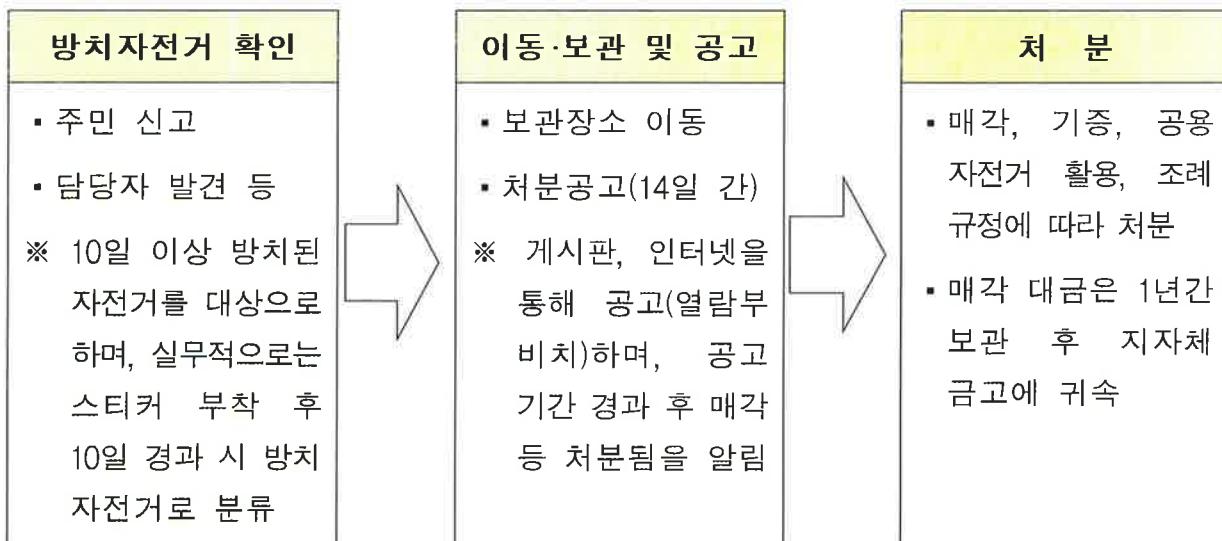
(단위 : 대)

연도 지역	2019	2020	2021
서울	17,911	16,763	14,110
부산	1,111	1,006	1,301
대구	1,068	733	864
인천	1,638	1,310	1,539
광주	107	151	137
대전	338	244	231
울산	86	113	123
세종	106	314	226
경기	7,433	8,196	8,410

- (처리 절차) 자전거법 시행령(§11*)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

* 방치자전거는 ①매각, ②기증, ③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그 처분 방법을 정하여야 함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3) 2019년도, 2020년도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2021년도 현황은 권역위 실태조사(‘22.3월) 결과를 정리

- (처리 방식) 대부분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처리업체에 최종 처분을 일임하거나 조례상 근거 없이 폐기 처분하는 등 부적정한 처리사례도 다수

< 관련 사례 >

<적정 처리사례>

- 서울 ○○구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방치자전거 3,859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3,465대)** 및 **기증(394대)** 방식으로 처분
- 경기 ○○시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방치자전거 2,399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2,210대)** 및 **공용활용(189대)** 방식으로 처분

<부적정 처리사례>

- ○○구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방치자전거 2,145대에 대하여 **매각(1,723대)** 및 **폐기(422대)** 방식으로 처분
- ○○시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방치자전거 3,356대를 전량 폐기하는 형식으로 **위탁처리업체에 최종 처분을 일임**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문제점>

1. 자전거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피해 심화

- 자전거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하천 등에 버려지거나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 이용시설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 증가 추세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현황>

(단위 : 대)

연 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거·처리 대수	16,585	27,571	32,508	34,288

(행정안전부, 2020년 자전거 이용현황)

- ※ 일부 지자체(35%, 80/228)는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2022.3월, 권익위 실태조사), 실제 방치 자전거의 규모는 위에 표시된 것보다 클 것으로 추정
-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주변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 이용시설을 점령한 방치 자전거로 인해 선량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피해 사례 빈발

<관련 민원 사례>

- 공원 주변 등 공공구역 자전거 거치대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가 많음. 낡거나 고장나면 주인이 처리해야 하지만, 공공 보관소나 거치대에 슬며시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있어 조속한 대책 필요함(국민신문고, '21.6월)
- ○○동 주민센터 자전거 거치대에 평크난 자전거, 안장 없는 자전거, 심지어 거미줄까지 엉겨 있고 벌겋게 녹슨 것까지, 고장난 자전거들이 마구 버려져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저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지경임(국민신문고, '17.1월)



- 자전거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폐기 절차를 위반하여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이 부당하게 공공에 전가되는 결과
 - 각 지자체는 자전거법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보관, 처리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

< 관련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22.3월) >

- ○○시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방식을 통해 방치 자전거를 수거·처리하면서, 용역비 등으로 총 208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
- ○○시는 2019.1월부터 2021.12월까지 3년간 방치 자전거를 직접 수거·처리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 165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
(이상 권리위 실태조사, '22.3월)

- 대형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규정 취지 무력화
 - ※ 누구든지 시장·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68③)
 - 방치 자전거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며, 이는 방치 자전거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

< 관련 보도 사례 >

- 쓰지 않는 자전거를 정식으로 폐기할 경우 2천 원~5천 원의 배출 비용을 내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든 전철역이든 거치대에 놓아두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과 세금 낭비 또한 내 알 바 아니다. 자전거 방치는 곧 쓰레기 무단 투기지만 번호판 등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다. 자전거와 함께 버려진 양심이 오늘도 쌓여가고 있다.(한국일보, '19.4.18.)

2. 유명무실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

- 자전거법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도난 방지 등을 위해 '95년 제정 당시부터 자전거 등록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등록 여부를 자전거 소유자의 자율⁴⁾에 맡김으로써 제도 도입 효과 미미
 - 현행 법령상 소유자가 자신의 자전거에 대하여 등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하나, 대다수 지자체가 등록 근거 및 등록체계를 마련하지 않음
 - 총 228개(세종·제주+226개 기초지자체) 지자체 가운데 73개 지자체가 조례에 등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17개(7.5%)에 그침
 - 각 지자체에 등록된 자전거의 총 대수는 113,314대로, 전체^{*}의 1% 내외에 불과
- * '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총 보유 대수는 1,127만대, 자전거 이용자 수는 1,340만명에 이룸(한국교통연구원, '17.3월)

<전국 자전거 등록 현황>

(단위 : 개 / 대)

지역	합계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지자체수	17	3	1	2	5	1	4	1
등록대수	113,314	45,581	1,965	417	47,023	1,603	10,049	6,676

(행정안전부, 2020년 자전거 이용현황)

- 대부분 지자체가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도난·분실 및 방치자전거 방지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 퇴색
- ※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등록제 해도 별 효과 없어요.” 라는 ○○구 담당자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에 한숨만 납니다.(국민신문고, '20.8월)

4) 현행 자전거 등록체계 상 자전거 소유자가 자신의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야만 자전거 등록 가능

-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고조
- * 국민신문고를 통해 '17.1월부터 '21.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개선 요청 사례는 총 33,506건으로, 매일 평균 18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사례 >

- 녹슨 자전거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건장치를 해 놓아도 도난범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자전거 등록을 받고 있는데, 자전거 도난이나 방치 대책이 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우리는 왜 시행하지 않는지요?(국민신문고, '20.8월)
- 길도 좁은데 아무렇게나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로 인해 일반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자전거 구입 시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 주세요. 분실 자전거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신문고, '18.7월)
- 자전거 장기간 무단 방치 이유는 소유자 확인이 안 되기 때문.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전거 등록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대책 강화 필요(울산매일, '19.12월)

- 국민들은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자전거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전거 등록제 확대·의무화 필요성에 대하여 압도적 동의 의견

- * '22.3.23.~4.7. 기간 중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90.3%, 869/962)이 등록제가 실시되면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것이라고 응답

<자전거 등록제·방치자전거 관련 인식조사 결과>

조사 항목	조사 결과(응답)
방치자전거 경험 유무	있음 861명(89.5%) / 없음 101명(10.5%)
자전거 소유주 책임 강화	찬성 777명(80.8%) / 무관 185명(19.2%)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	도움 893명(92.8%) / 중립 39명(4.1%) / 도움안됨 30명(3.1%)
자신의 자전거 등록 의향	등록할 것 869명(90.3%) / 등록 않을 것 93명(9.7%)



- 인식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방치 자전거로 인한 피해·불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지지하면서 스스로도 자전거를 등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
- ※ 자전거 등록제 의무화를 규제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자전거 소유자 입장에서 실제로 등록으로 인한 특별한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한 규제로 인식

< 참고 : 자전거 등록·분실·방치 관련 외국사례 >

(일 본) 법률로서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자전거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방범 등록'을 하여야 함
② 자전거 판매자(소매업자)는 자전거를 판매할 때에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보안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함
- ※ 법령상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등)는 없으나 판매점 등록의 편리성, 적극적 홍보 등으로 대부분(79.8%) 소유자가 등록 의무 준수('18.10월, 자전거산업진흥협회)
- 일반적으로 자전거 구매 시 판매자가 즉석에서 등록 신청 대행
 - 자전거 소유자는 등록에 따른 비용(대부분 6천 원 정도)을 납부하고 등록카드 및 스티커 수령
 - 등록정보는 경찰과 공유·활용(도난자전거 등), 등록 유효기간 10년

(네덜란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대응보다는 재정을 통한 도난 방지 시설 설치, 이용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추진

(덴마크) 자전거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신축건물에 자전거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난 대책의 하나로 자전거 임대 및 도난보험 제도 도입

<개선방안>

□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마련

- 자전거법 규정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 등록 근거· 절차 등 마련

- 등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자전거법(§22)은 자전거 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자전거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등록 의무화' 논의와는 별도로 현행 자전거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신 설>	<p>제○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즉시(○일 이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면, 동)의 장에게 위임한다.</p>



□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정책제안)

-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분실·도난 및 방치자전거 예방 등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도의 의무화 전환 검토 필요

※ 자전거 등록 의무화에 따른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정보의 증가는 ‘자전거 등록 정보 통합·관리시스템’(법 §22②) 구축·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 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 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2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문제점>

- 법령상 근거 없는 방치자전거 처리 관행
 - 지자체가 방치자전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자전거법 시행령」(§11②)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함

< 자전거법 시행령 규정 >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2. 기증
 3. 공영자전거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치자전거를 처리할 때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그 방법을 정하여야 함
- 그럼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별도의 처분 근거 없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리
 - * 방치자전거의 매각 등 최종 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위탁업체가 임의로 방치자전거를 최종 처분·수익할 수 있도록 일임
 - 이는 단순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리’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 금고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 초래

< 관련 사례 >

- ○○시는 최근 3년('19년~'21년)간 위탁업체를 통해 2,831대의 방치자전거를 수거·처분하여 매각대금 총 1,658만 원을 시금고에 귀속시킨 반면, ○○구의 경우 같은 기간 1,891대의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면서, 업체가 임의 결정·처분토록 함으로써 시금고에 귀속시킨 금액 없음
- ○○시는 최근 3년('19년~'21년)간 3,356대의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면서, 법령에 근거한 매각 등 절차 없이 '폐기'함으로써 시금고 귀속 금액 없음 (이상 권익위 실태조사, '22.3월)

※ 방치자전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해당 지자체 금고에 귀속

□ 방치자전거 처리 공백

- 시장등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 등 절차를 거쳐 매각·기증 등 처분(자전거법 시행령 §11①②)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이외의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 곤란

< 조례 규정 사례 >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 ② (생략)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관리자는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 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방치 장소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상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을 보완

<개선방안>

□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

- 법정 처분 방법(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이외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조례에 처분 근거를 마련

※ 법령(자전거법 시행령 §11②)에서 조례에 위임한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 규정

□ 방치자전거 처리의 장소적 제한 개선

- 일부 지자체의 방치자전거 처분 제한(자전거 주차장에 한정) 규정을 보완,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신 설>	<p>제○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야 한다.</p> <p>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p>



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
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
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2. 노인정

3. 학교, 도서관

4. 기타 희망하는 주민·단체

5.

6.

.

.

.

※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외),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
등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

3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

<문제점>

- 자발적 자전거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체계 미흡
- 자전거 등록의 비강제성, 등록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대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시행 효과* 부진
 - ※ (사례) ○○구는 2014년부터 8년째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전거 등록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2,097대 등록에 그침. 홍보 부족 탓에 자전거 등록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 많아 유명무실(기호일보, '22.3.8.)
- 이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 등록인센티브 도입사례 >

- 자전거 이용실적 마일리지 제도*(경남 함양군)
 - * 자전거 등록 유도 및 실질적 이용 확대를 위해 군에 등록한 자전거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2만 원 ~ 10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우선 이용 규정(서울 양천구, 강동구, 노원구, 울산 중구, 경남 창원시)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 시설 요금 할인(서울 강동구, 노원구)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하여 자전거 관련 교육·행사 등 참여 시 안전용품 지급(서울 양천구)

- 반면, 대다수의 지자체는 강제성이 없는 자전거 등록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전무
- ※ 228개 지자체(세종·제주 + 기초 226개) 중, '20년 현재 17개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단 6곳에 불과

- 명목뿐인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 등록 인센티브 제도를 보편화할 필요

<개선방안>

-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 기 도입 지자체와의 형평성, 자전거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등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신 설>	<p><u>제○조(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u></p> <p><u>① 제○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등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class="list-item-l1">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 지급</p> <p class="list-item-l1">2.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 요금의 할인(○○% 이내)</p> <p class="list-item-l1">3. 공영자전거 이용요금의 할인(○○% 이내)</p> <p>.</p> <p>.</p> <p>.</p> <p><u>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u></p>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 ※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 등록 근거, 구체화된 절차 등 마련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 자전거 소유자의 자전거 등록 의무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지방자치단체	'23.9.
②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자전거 처분방법 구체화 ※ 법정 처분방법(매각,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조례에 처분근거 마련▪ 방치자전거 처리의 장소적 제한(자전거 주차장) 개선 ⇒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	행정안전부	중장기검토 (정책제안)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3]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p>⇒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반영</p>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지방자치단체	'23.9.

붙임1

등록방식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20년 기준)

(단위 : 대)

등록방식	지자체명	등록대수	표시방식	최초시행
수기	서울 양천구	8,093	스티커	2008년
	서울 강동구	235	스티커	2014년
	울산 남구	332	NFC칩	2016년
	경기 고양시	992	번호판	2019년
	경기 광명시	37,728	스티커	2014년
	경기 의왕시	46	스티커	2012년
	경남 사천시	542	등록증	2010년
	경남 함양군	134	등록증	2011년
	제주 제주시	6,676	등록증, 스티커	1999년
모바일 앱	서울 노원구	37,253	스티커	2013년
	경기 안양시	3,295	스티커	2012년
	경북 상주시	1,603	스티커	2016년
	경남 창원시	9,285	스티커	2015년
인터넷	울산 중구	85	스티커	2012년
	경기 부천시	4,962	스티커	2018년
	경남 김해시	88	미발급	2008년
수기, 인터넷	인천 연수구	1,965	스티커	2014년
합계	17개 지자체	113,314		

(p.3. '등록방식' 관련 / 국가통계포털(KOSIS) 자전거등록제 운영현황 정리)

불임2

자전거의 등록·사용·폐기 과정(요약)

구매·등록 단계	사용 단계	사용 종료(폐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자 : 자전거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 신청※ 등록방식 : 직접방문,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차대번호(고유번호), 제조사, 색깔 등 <u>자전거 정보</u>와 주소, 연락처 등 <u>소유자 정보</u> 등록자전거등록증, 등록 스티커 교부 및 부착, 지자체·경찰관서 등록 정보 공유등록 후 방문, 온라인 통해 등록 자전거 조회, 분실·도난 신고 및 분실·도난 자전거 목록 확인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거치대), 자전거 (공공)수리 센터 등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등록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급※ (예시)<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전거 주차장, 수리 센터 등 자전거 이용 시설 요금 할인공유자전거 요금 할인선택적 자전거보험 보장 제공자전거 안전용품(안전모, 시건장치 등) 제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현금, 지역 상품권 등)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상 폐기 자전거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폐기물 스티커(5천 원 내외) 구매·부착하여 대형 생활폐기물로 지정 장소에 배출무단방치 자전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 <p>※ (처리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방치자전거 확인(주민 신고, 담당자 확인)② 방치자전거 이동·보관③ 처분공고(열람부 작성)④ 방치자전거 처분(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⑤ 매각대금 1년간 보관 후 미환급금 지자체 금고로 귀속



불임3**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규정현황(등록제 실시 17개 지자체)**

등록제 실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내용
서울 노원구	1) 자전거 주차장 우선 주차 2)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보관소 등 이용시설 요금 할인
양천구	1) 주차장 우선 주차 배려 2) 교육, 행사, 캠페인 등 참여 시 안전용품 지급(예산 범위내)
강동구	1) 자전거 주차장 우선 주차 2)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보관소 등 이용시설 요금 할인
인천 연수구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울산 중구	등록 권장_우선 주차
남구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 등록 절차 구체적 규정(조례 제6조의3, 시행규칙 제2조))
경기 고양시	각종 등록 혜택 마련 시행 근거(조례 제24조)_구체적 사항 시행규칙 위임 ※ 시행규칙 미제정
부천시	등록자 다양한 혜택 제공 규정(구체적 내용 미규정)
안양시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광명시	각종 등록 혜택 마련 시행 근거(조례 제14조)_구체적 사항 시행규칙 위임 ※ 시행규칙 미제정
의왕시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경북 상주시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경남 창원시	등록 권장_우선 주차
사천시	등록자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
김해시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함양군	1) 등록 장려_인센티브 부여_이용실적 마일리지 제도 운영 2) 자전거 주차장 우선주차
제주 제주시	등록 인센티브 관련 근거 없음

1) 자전거 등록 관련 규정

<자전거법>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법 시행규칙>

-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 · 면 · 동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에 **자전거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법 제22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전거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한다)를 말한다.
- ⑤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맨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전거 등록증

등록 번호		등록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전 거 제원 등	생산 회사명	자전거 색깔	<input type="checkbox"/> 빨강 <input type="checkbox"/> 검정 <input type="checkbox"/> 노랑 <input type="checkbox"/> 파랑 <input type="checkbox"/> 흰색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전거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생활용 <input type="checkbox"/> 산악용 <input type="checkbox"/> 경기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몸체 번호	기어 단수	<input type="checkbox"/> 12단 이하 <input type="checkbox"/> 18단 이하 <input type="checkbox"/> 20단 이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130-00411일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7. 2. 9.>

자전거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자전거 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하며, 자전거 등록 번호의 표기는 예시와 같이 한다.

※ 등록번호 예시

A01 - 000001
지방자치단체 코드 - 연번

2. 자전거 등록번호 중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비고에 따른다.
3. 자전거 등록번호 중 연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000001번부터 999999번까지를 등록 순서대로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각 자자체별 고유번호 부여(예 : 서울 종로구 A0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7. 2. 9.>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

1. 규격

가.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경우

- 1)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 2) 등록번호와 QR코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가로 5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 나.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지 않는 경우
- 1)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 세로 15mm, 허용오차 1mm 이내
 - 2) 등록번호와 QR코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가로 50mm × 세로 15mm, 허용오차 1mm 이내

2. 표기사항

가. 필수사항: 자전거 등록번호

나. 선택사항: 지방자치단체 로고, QR코드, 자전거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등

3. 글자 등의 모양 및 크기

가. 글자체: 서울남산체

나. 글자 크기: 등록번호 14포인트, 한글 및 영문 8포인트

다. QR코드 크기: 가로 11mm × 세로 11mm

4. 스티커 재질

가. 직사광선, 습기 등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고, 접착력이 강하여야 한다.

나.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낼 경우에는 찢어져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5. 부착 위치

가. 기본 위치: 자전거 프레임의 탑 튜브 전면(헤드 튜브 쪽)

나. 자전거 구조상 탑 튜브 전면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자전거 프레임의 다운 튜브 상단(헤드 튜브 쪽) 또는 시트 튜브 전면 중앙



기본 부착 위치 : ① 탑튜브전면



기본 부착 위치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다운 튜브 상단 ③ 시트 튜브 전면 중앙

2) 방치자전거 처리 관련 규정

<자전거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 보관 ·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 · 모양 · 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 · 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자전거법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정 본 입 니다.

2022. 9. 2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CRC